

[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-25호]

2024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『소공인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

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제조업 소공인의 제품 홍보 활성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『소공인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』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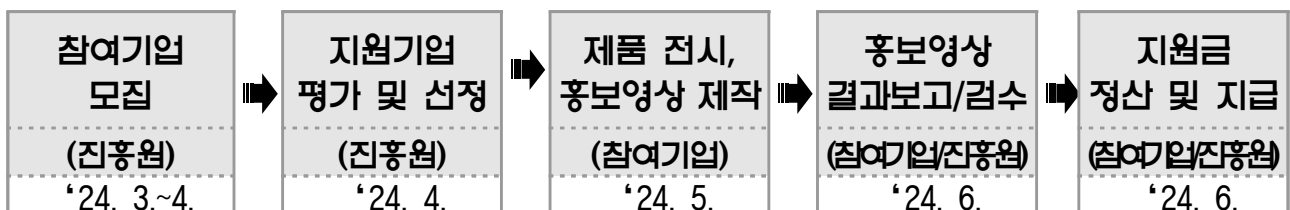
2024. 3.

(재)화성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** 관내 소공인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소공인 제품 홍보 촉진 및 판로개척 도모
- 사업대상:**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
- 지원규모:** 18개사, 기업당 최대 200만원
 - ※ 지원금액을 초과한 제품 홍보영상 제작 비용은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
- 지원내용:** 관내 소공인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비용 지원
 - ※ 홍보영상 제작 선정기업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내 제품 전시관 입점 조건
- 제작유형(예)**

구분	주요내용	비고
커머스형 (3분~5분 내외)	· 모델, 임직원 함께 커머스 형식의 제품소개 · 제품시연을 통한 제품 특징점 중심 기획	
인터뷰·토크쇼 형 (3분~5분 내외)	· 직원, 관련자 등 제품 스토리텔링 인터뷰 영상 · 제품에 대한 스토리 중심으로 특징점을 소개	
자유형 (3~5분 내외)	· 특별한 컨셉 없이 자유로운 제품 홍보영상 · 기업 또는 제품소개 자유형식 · 실외 등 장소 제약 없음	
제품사용 설명형 (1분~3분 이내)	· SNS, 홈페이지 등 업로드용 · 소비제품 사용설명 영상	

 추진 일정


2 모집개요

□ 접수기간: 공고일로부터 **2024년 4월 23일(화) 16시까지**

※ 지원 규모 초과 접수 시 조기마감 가능

□ 접수방법: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온라인 접수

-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(<https://hipa.hscity.go.kr>) 접속→ 회원가입→ 지원사업공고→ 공고문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→ 지원하기→ 제출서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

※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(현장방문·전화이메일 접수 불가)

신청 시 유의사항

- 1) 신청서식은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모든 요구서류 구비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
- 2) 방문·이메일 제출 불가(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)
- 3)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
- 4)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후 제출할 것을 권고

□ 지원자격: **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화성시 소재** 개인 또는 법인 기업

* 기본요건 '가', '나' 두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구분	자격 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건	가.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*인 자 * 도시형 소공인: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,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나.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(화성시 전역) 주요 업종^[참조]을 영위중인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[참조]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주요업종(중분류 기준 10가지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이며, 해당 중분류 업종의 대분류는 모두 "C (제조업)"임. * '국세청 업종코드-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' 노랑셀 참조 -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후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변환 결과 아래 10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요망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대분류</th> <th>중분류</th> <th>중분류명</th> <th>대분류</th> <th>중분류</th> <th>중분류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C</td> <td>20</td> <td>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27</td> <td>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1</td> <td>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28</td> <td>전기장비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2</td> <td>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29</td> <td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5</td> 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</td> <td>C</td> <td>30</td> <td>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6</td> <td>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31</td> <td>기타 운송장비 제조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C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	27	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C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	C	28	전기장비 제조업	C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	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	C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	26	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	31
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	27	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	C	28	전기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	C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6	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	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가 위치한 기업	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관내기업 으로 인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요약	① 소공인 ② 집적지구 주요 업종코드 영위 ③ 화성시 관내 기업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지원 제외대상

○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 제외

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지원 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
부적격 대상

- 1) 공고 마감일 기준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* 단,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년도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
- 2)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(사업자 미등록자)인 경우
- 3) 공고 마감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(지점은 관내 기업으로 인정불가)인 경우
- 4) 신청서,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
- 5)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6)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
- 7) 휴·폐업 혹은 파산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8)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중복수혜 대상

- 1) 공고일 기준 2024년 상반기 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
- 2) 동일아이템 동일목적으로 타 정부기관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경우
- 3)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.

3 선정 및 평가

□ 선정 규모: 18개사 이내

□ 선정 방법

○ 3인(외부 2인, 내부 1인)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(서면)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○ 지원 대상 충족 여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※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(포기)기업 발생 시 고득점순으로 차순위 기업 선정

□ 평가기준표

평가 항목	세부 내용	배점
지원의 필요성	- 영상 제작 추진 필요성, 기업 목표 및 차별성	20
홍보 활용계획	-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20
사업 기대효과	- 예상 창출 성과(목표 매출액, 고용, 인지도 등)	20
*전시 시설 적격성	- 제품의 전시 적합 여부(규격 및 무게 등)	20
전시 목적 적정성	-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홍보에 적합한 기업 제품	20
합 계		100

* 전시 제품규격

유형	규격(cm, W*D*H)	적정 하중	전원 공급	규격참고
A	42*25*60	10kg 이내	가능	
B	(B-1) 95*27*50	10kg 이내	불가	
	(B-2) 110*27*50			
	(B-3,4) 110*27*50			
C	(C-1,2,3) 29*29*20	10kg 이내	가능	
	(C-4,5,6) 29*29*15		불가	
D	16*16*20	5kg 이내	불가	

선정통보

- 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선정기업에 개별통보(이메일, 전화)

4 제출서류

제출서류 목록

- (필수제출 서류) 적색 '●' 표시, (선택제출 서류) 검은색 '●' 표시

업로드 단계 (단계상정보입력중)	제출항목	비고	
「제출서류 업로드」	● (서식 제1호) 참여신청서	한글 또는 PDF 형식, 하나의 파일로 제출	
	● (서식 제2호) 자가점검표		
	● (서식 제3호) 서약서	확인 방식 아래 [참조] 4번, 5번, 6번 확인 아래 [참조] 5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	
	● (서식 제4호) 주업종 코드 확인서 1부 ↳ 홈택스 조회화면 대체자료 1부		
	●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1부		
	「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」	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1부	법인이업인 경우 필수
		● 공장등록증 1부	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 필수
		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 1부	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필수
영상 제작 후 단계	●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) 1부	좌측 3가지 항목의 경우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	
	●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		
「선정기업 제출」	● (서식) 홍보영상 제작 결과보고서	※ (서식) 결과보고서 및 대금청구서 서식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제공 예정	
	● (서식) 대금청구서		
	● 제품홍보영상 원본(USB)		
	● 선정기업 통장사본		
	● 홍보비 결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(원본대조필)		
	● 홍보영상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		

[참조]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
- 1) 발급서류는 모두 **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이내 발급분 제출**
- 2) 파인드 시스템: 민원발급서류 자동 업로드 기능, '직접제출' 버튼 누르면 해당 서류도 수동 업로드 가능
- 3) **소상공인확인서는 '소기업소상공인' 문구가 있어야 인정**
 - *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mss.go.kr/>)'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5일~10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
(☎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-6508)
 - **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' 인정불가
- 4) [(서식 제4호)주업종 코드 확인서] 작성 시, **아래 방법대로 코드 확인하여 작성**
 - * (붙임3) 업종코드-표준산업분류코드 연계표는 통계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로, 단순 참조를 위한 자료임.

<주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>

- 1) 국세청 **홈택스(www.hometax.go.kr)**에서 **주업종명(업종코드)조회**
 - 순서: 로그인(필수) ▶ MY홈택스 ▶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▶ 주업종명(업종코드) 조회
 - 홈택스 문의처: 국번없이 126
- 2) 조회 후 **두 가지 모두 수행**
 - 2-1) "(붙임4) 산업분류코드 자동변환기" 에서 국세청 조회 업종코드(6자리) 입력 후, **표준산업분류코드로 변환** ▶ [(서식 제4호) 주업종 코드 확인서] 에 주업종 코드 작성
 - 2-2) 서식에 홈택스 조회 화면 **캡처본 첨부**
- 3) 확인서 하단에 **인감 또는 자필서명 날인 후 제출**

- 5) 기본요건에서 제시된 10가지 업종을 영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4)번 방식대로 주업종 체크가 어려울 경우, [(서식 제4호)주업종 코드 확인서]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주업종 작성 후 홈택스 조회 캡처본 대신 **아래 세가지 서류 중 1가지 선택하여 대체 제출**

<대체서류>

택1	▶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	세무서 방문, 국세청 홈택스, 정부24
	▶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(손익계산서 必)	국세청홈택스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
	▶ (면세사업자)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	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홈택스(국번없이 126)

- 6) 기본요건에서 제시된 10가지 업종을 영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**4), 5) 모두 구비 어려울 경우, 홈택스 조회화면 또는 대체서류 없이 [(서식 제4호)주업종 코드 확인서] 만 서명하여 제출**

5

유의사항

□ 신청자 유의사항

-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 시,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관리 시스템(질링스) 가입 필수
 - ※ 선정 시 성과관리 시스템 가입링크 안내 예정, 미 가입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며,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전공지된 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선정 후 제품 전시에 불응한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□ 지원금 지급

- (지급방법)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
- (지급조건) 지원금액을 초과한 제품 홍보영상 제작 비용은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하며,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(기업 자부담)
 - ※ 제품 전시,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물 완성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
- (지급시기)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 비용 증빙서류 제출, 소요비용과 증빙서류 일치 확인 후 지원금 일괄 후지급(6월 말 예정)

□ 문의처

- 사업관련: (재)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(☎ 031-377-3693, ✉ jsnoh@hsbiz.or.kr)
- 기업지원플랫폼 관련: (재)화성산업진흥원 경영총괄팀(☎ 031-278-4392, ✉ jonghyun@hsbiz.or.kr)

붙임 (신청서식)2024년 소공인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1부.

[재]화성산업진흥원장